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확인 및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8. ~ 2020. 7. 20.)
3) 규제대상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 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u> <u>「국세징수법」 제30조 ,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생략) ②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 203 - 6619